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4일, 김용민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19.) 상정, 축조심사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1. 1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2차 전체회의(2026.2.1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용민의원)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도 사법권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함. 그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헌법소원이 차단되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질서의 통일성과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사건 수와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리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68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였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함.

4. 대체토론의 요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 대상에는 법원의 재판이 제외되어 있으나,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기본권 구제의 공백 방지 및 기본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심사에 이어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하게 되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침해할 수 있고, 소송 남발로 인한 사법체계의 비효율, 소송 지연에 따른 국민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됨.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 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